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11184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2.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B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4. 23.

##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B의 피고 C에 대한 소송은 2021. 1. 26.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B와 피고 C 사이에 소송종료 이후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1. 피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4,833,599원 및 그 중 4,984,409원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6. 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833,59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14,833,5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의 원고 B에 대한 채권

- 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3. 6. 19. 원고 B에게 7,000,000원을 계약만료일 2016. 2. 22.,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6.5%로 정하여 대여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② 원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D의 원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2015. 5. 29. E 주식회사에, 2018. 10. 26. 주식회사 A에 각 순차로 양도되었다.
- ③ 주식회사 A의 원고 B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2020. 2. 26. 기준으로 14,833,599원 및 그 중 4,984,409원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나. 원고 B의 재산처분행위

- ① 원고 B의 아버지 F는 2018. 6.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 B, 피고 C 등이 있었다. 원고 B은 2018. 6. 9. 피고 C 등과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 ② 2018. 9.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원고 B의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① 주식회사 A는 2020. 3. 11.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한편 원고 B은 2020. 2. 6. 서울회생법원 2020개회101117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0. 5. 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주식회사 A의 원고 B에 대한 채권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위 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었고 나아가 2020. 11. 25.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 B은 2020. 6.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A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A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원고 B에게 수계되었는데, 원고 B이 2020. 12. 29. 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그 부분이 2021. 1. 11. 피고 C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C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소송은 소 취하 이의 기간이 경과한 2021. 1. 26.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A는 원고 B의 소 취하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1. 3. 12.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 3.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2020. 5. 7. 서울회생법원 2020개회1011175호 사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위 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었으며 2020.

11. 25.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소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사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조미옥

##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5층 공동주택

지하1층 434.76㎡, 1층 463.00㎡, 2층 내지 25층 각 445.5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부천시  대 60984.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3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0984.8분의 40.4487 끝.

